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김미애 · 박준태
이헌승 · 최보운 · 이달희
최수진 · 조정훈 · 신동욱
곽규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,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,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 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

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판정”을 “판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(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신체등급의 <u>판정</u>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신체등급의 <u>판정 등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④</u> · <u>⑤</u> (생략)	<u>⑥</u> · <u>⑦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제79조(여비 등의 국고부담)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. 1. · 2. (생략)	제79조(여비 등의 국고부담) ① 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2의2. 제12조제4항에 따른 심리</u>
	<u>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</u>
	<u>비용</u>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